

중국법



강대규
변호사(토목공학 전공)

1. 서론

학부생 시절, 토목공학을 전공하였고, 중어중문학을 복수전공 하였습니다. 복수전공을 하면서 3학년 2학기부터는 토목공학과 과목을 수강하지 못해서 공학적 지식이 심도있게 형성하지 못한 점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그러나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법. 토목공학을 심화적으로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 중어중문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중국 어학, 중국 문학, 중국 역사나 풍습 등을 개괄적으로나마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학부생 시절 공모전 당선, 봉사활동 등으로 중국을 3차례나 다녀왔고, 국내에서 진행된 국제행사에서도 중국인들을 상대로 행사진행 봉사등을 하였습니다. 동기나 선배들이 왜 이리 중국에 빠져있냐며 토목공학 공부나 하라고 했지만, 좋아하는 일을 말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후 졸업이후 직장생활을 할때도 출퇴근길에 듣는 mp3에는 중국노래나 중국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사랑은 변호사가 되어도 계속됩니다.

얼마 전 대한변호사협회와 한중법학회 공동주최로 제1회 중국법 아카데미가 개설되었습니다. 총 8회차 과정으로 개설이 되었는데, 지난 9월에서 10월까지 퇴근 후에 강원도 춘천에서 총 8번을 상경하며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들은 강의를 혼자 묵히기 아까워 터널학회 회원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중국의 헌법

중국의 근현대사는 1949년 6법전서를 폐지, 1957년 반우경화운동, 1966년 문화대혁명 등을 거치며 많은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운 만큼 헌법이 총 4차례 제정되고, 5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9차례 개

정되었을 뿐 제정은 1948. 7. 17. 최초의 제정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은 4차례(1954.9. 최초헌법 160조문, 1975.1. 문화대혁명시기 30조문, 1978. 3. 문화대혁명 후 60조문, 1982. 12. 현행헌법, 138조문)나 제정이 되었으니 넓은 토지와 폭발적인 인구수만큼 많은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1982. 12. 현행헌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5차례의 개정을 하였는데, 1988. 4.에는 사영경제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였고, 1993. 3.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행하였습니다. 2004. 3.에 이르러서는 사유재산 불침범 원칙을 확립하고 국가는 인원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중국의 헌법은 전국인민대표회의(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제·개정을 하는데,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이자 입법부, 행정부 역할을 수행하고, 집행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매년 3월 5일에 개최되는데, 2,800여명이 소속되어있는 기구입니다.

3. 중국에도 소유권이 있을까요?

정답 : 중국에도 소유권은 존재합니다. 다만 누가 소유하는지가 문제이지요.

중국 물권법 제2편¹⁾은 소유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5장은 ‘국가소유권·집단소유권·사인소유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세 소유권의 차이는 전적으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종류에 있습니다. 가령 도시부의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고, 농촌부의 소유권은 농민집단의 소유에 속하며, 사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는 없고, 동산이나 저축·투자 및 그 수익 등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소유권에 속하지 않은 기업출자에 대한 권리관계나, 법인의 소유권, 사회단체의 소유권 등은 마지막 장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소유권의 권리주체는 국민전체이며, 국무원이 국가를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합니다. 도시의 토지 이외에도 광물, 하천, 해역, 무선전파수대역자원등은 국가의 소유입니다.

집단소유권의 권리주체는 구성원 전체이고, 중대한 사항은 구성원 전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집단에 소유한 토지, 산림, 생산설비, 배수설비, 체육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집단의 구성원을 어떻게 확정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없고, 이혼한 경우에 취급이나, 개개농민의 지분의 양도가능성 등 불명확한 점이 많고, 국가로부터 수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 처분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른바 ‘처분권이 없는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인소유권의 객체는 합법적인 수입이나 건물, 생활용품, 원료 등 부동산·동산이고 그 이외에 경제활동의 결과인 투자수익 등입니다. 그러나 ‘사인’이 정확히 어떠한 주체를 포함하는지 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3편에는 용익물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소유의 토지는 건설용지사용권, 집체소유의 토지는 토지도급경영권을 용익물권으로 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습니다.

1) 법률의 체계는 편, 장, 절, 관, 조, 항, 호, 목 등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4. 중국의 소송실무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등한 삼권분립이지만, 중국은 사법기관이 독립이 되어 있지 않고, 입법권의 하위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원에 소제기를 하면 접수가 되어 소송절차가 곧바로 진행이 되지만, 중국은 '입안'이라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접수와 소송진행사이에 '입안'이라는 단계가 있어서 접수를 하고도 '입안'이 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중국 재판부는 우리나라와 달리 하루에 한 사건정도만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종일 진행하므로, 미리 증거자료가 모두 제출되어야 하고, 소장 및 답변서 등을 구술로 전부 진술해야 합니다.

5. 결 론

유사이전부터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현재에도 상호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법과 제도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현행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법령이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채무자들을 신상공개하거나 출국금지하게 하는 조항이 있거나, 우리나라는 취업규칙을 배치해야 하는 것에 비해 중국은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낱장에 대해 일일이 읽어보고 서명해야 하는 등의 급진적인 조항들이 눈에 띕니다. 유치권에 대해서도 경매를 통해서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대금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막연한 오해로 중국의 법과 제도를 배척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기사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